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77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개명 전 D)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2022. 1. 17.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24,206,613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06,61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6.9%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E가 2022. 4. 14.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1. E와 혼인 신고를 마쳤다. E는 혼인기간 중인 2019. 10. 8.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21. 8. 4. E와 협의이혼을 하고 그 신고를 마쳤다. 다. E는 2022. 1. 1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5,900만 원이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2,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E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사실상 위 근저당권 부담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분할의 이익은 매우 미비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